

신·구조문 대비표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변 경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p> <p>1.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조회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p> <p>2. “대출이동시스템”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대출 정보조회 및 상환, 말소 접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대출정보를 일괄조회하고, 조회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p> <p>3. “신규기관”이란 타사 대출 대환을 전제로 신규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p> <p>4. “보유기관”이란 상환할 기존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p> <p>5.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의미합니다. 단, 주택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본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합니다.</p> <p>6.~10. 생략</p> <p>제7조 (대출실행, 대출상환 및 말소접수) ① 고객은 이용채널에서 신규기관과 본 서비스 관련 계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신규대출 실행 및 보유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대출정보조회 이후 금융회사의 심사 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고객이 신규대출을 실행할 때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p>② 고객은 신규기관에게 기존대출 상환 및 말소접수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신규기관은 보유기관 상환계좌(가상계좌 등)에 입금처리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며 보유기관으로 기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접수를 요청합니다. 말소접수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은 보유기관과 제휴된 법무사 또는 신규기관과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처리합니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p> <p>1.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조회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p> <p>2. “대출이동시스템”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대출 정보조회 및 상환, 말소 접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대출정보를 일괄조회하고, 조회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p> <p>3. “신규기관”이란 타사 대출 대환을 전제로 신규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p> <p>4. “보유기관”이란 상환할 기존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p> <p>5.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의미합니다. 단, 주택 종류가 아파트 또는 신규기관의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주거용)인 경우에만 본 서비스의 대상에 해당합니다.</p> <p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실시간 시세 유무는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이외의 시세 활용 여부는 신규기관이 자율 결정함</p> <p>6.~10. 좌동</p> <p>제7조 (대출실행, 대출상환 및 말소접수) ① 고객은 이용채널에서 신규기관과 본 서비스 관련 계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신규대출 실행 및 보유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대출정보조회 이후 금융회사의 심사 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고객이 신규대출을 실행할 때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 <p>② 고객은 신규기관에게 기존대출 상환 및 말소접수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신규기관은 보유기관 상환계좌(가상계좌 등)에 입금처리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며 보유기관으로 기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접수를 요청합니다. 말소접수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은 보유기관과 제휴된 법무사 또는 신규기관과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처리합니다.</p>

현 행	변 경
<p>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의 철회)에 의거하여 철회권 행사 가능한 대출, 연체대출, 선납이자 환출 불가한 대출, 본 서비스 이용 신청 당일 부채 증명원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대출, 신규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주택 종류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견질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잔금대출중 신청일기준 주택담보취득 되지않은 경우), 유통화 대출(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 등) 등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환이 불가합니다.</p> <p>* 견질담보 : 정식담보로 취득할수 있는 대상이 아닌 담보물</p> <p>④~⑪ 생략</p>	<p>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의 철회)에 의거하여 철회권 행사 가능한 대출, 연체대출, 선납이자 환출 불가한 대출, 본 서비스 이용 신청 당일 부채 증명원 및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대출, 신규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주택 종류가 아파트 또는 신규기관의 실시간 시세조화가 가능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주거용)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견질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잔금대출중 신청일기준 주택담보취득 되지않은 경우), 유통화 대출(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 등) 등의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환이 불가합니다.</p> <p>* 견질담보 : 정식담보로 취득할수 있는 대상이 아닌 담보물</p> <p>④~⑪ 좌동</p>